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0일
다. 상정일자 : 2004년 12월 13일
라. 의결일자 : 2004년 12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동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읍·면지역은 향후 지역여건에 따라 교통량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춰 추진코자 하며
-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등)으로 인한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노상주차장은 상가·주민자율조직 및 기주자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3%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며
-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지역의 공영주차장 유효화 신설(안 제2조)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신설(안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제18조 제1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안 별표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 별표 3)
-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효화 개정(안 조례 제396호 부칙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격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한 지역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과 주거밀집 지역의 거주자,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확대하여 택지지구내 상가의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을 조항별로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별표 1)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기준을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밀화 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 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제2조 적용범위 조항이 개정되면 읍·면 지역의 주차요금 및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김포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